

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감사의견서 및 감사위원 성명 공고

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감사의견서 및 감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.

결산검사 의견서

순천시장 귀하

2017 년 4 월 24 일

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순천시 의회로부터 순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17년 4월 3일부터 2017년 4월 22일까지 (20일간)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우리의 결산검사는 2016회계연도 순천시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순천시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
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,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,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.

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순천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,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·세출결산(계속비,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), 재무제표, 성과보고서, 채권 및 채무의 결산, 기금, 공유재산,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순천시 결산 검사 위원

대표위원	이	복	남	서명/복남
검사위원	박	철	우	서명/박철우
검사위원	홍	금	표	서명/홍금표
검사위원	김	태	호	서명/김태호
검사위원	오	창	윤	서명/오창윤

2017년 6월 5일

순천시의회의회장 임 종 기

